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298

발의연월일: 2022. 1. 7.

발 의 자 : 김예지 • 구자근 • 추경호

김선교 • 배준영 • 김희국

김승수 · 홍석준 · 정희용

권명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정규모(1만㎡)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. 이러한 '건축물 미술작품 제도'는 건축물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.

그런데 이러한 취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통해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음악·무용·연극·연예·국악·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인 '공연' 분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·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「공연법」 제2조

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"등"을 "및 공연의 개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미술작품의 설치에"를 "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「공연법」 제2조에 따른 공연(이하 이 조에서 "공연"이라 한다)을 개최하는 데"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설치에"를 "설치 또는 공연의 개최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절차 및 방법"을 "및 공연 개최에 관한 절차·방법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건축물 건축 시 공연 개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 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	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
설치 <u>등</u>) ① 대통령령으로 정	설치 <u>및 공연의 개최 등</u>) ①
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	
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(이하	
"건축주"라 한다)는 건축 비용	
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	
을 회화·조각·공예 등 <u>미술</u>	<u>미술작</u>
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	품을 설치하거나 「공연법」 제
다.	2조에 따른 공연(이하 이 조에
	서 "공연"이라 한다)을 개최하
	<u>는 데</u>
② 건축주(국가 및 지방자치단	②
체는 제외한다)는 제1항에 따	
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	
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	<u>설</u>
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	치 또는 공연의 개최에
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	
출연할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	4
설치 <u>절차 및 방법</u> 등에 관하	및 공연 개최에 관한 절차・방
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법 법
로 정한다.	